

지도교수제도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09.04.27.
개정 2015.01.20.
개정 2015.03.02.
개정 2018.03.02.
개정 2018.05.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제22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학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지도교수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생지도교수제) 학생지도교수제는 집단지도교수제와 개별지도교수제로 나눈다.

제3조(집단지도교수제)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의 입학과 동시에 조를 편성하여 교수들에 의한 집단지도교수제도를 운영한다. 조를 편성함에 있어 조별 교수 숫자와 학생 수를 모두 복수로 한다. 다만, 이는 1학년 2학기까지 실시한다.

제4조(개별지도교수제) ① 1학년 2학기까지의 교과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년 1학기에 개별 지도교수를 배정하도록 한다.

② 개별지도교수제도는 대상 학생의 입학당시 배정된 집단지도교수제도를 기초로 운영하며, 대상 학생은 본인의 집단지도교수 중 1,2지망의 순서로 희망 지도교수를 선택하여 포털을 통해 신청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집단지도교수 외의 다른 지도교수를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교수 1인당 지도학생은 학년당 5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학년당 5인을 초과하여 학생들의 선호가 집중되는 교수에 대해서는 제도적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을 적절히 조정하여 배정하도록 한다.

④ 신임교원에 대해서도 기존교원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을 배정한다.

⑤ 학생이 지도교수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여건상 가능한 경우에 원장단에서 지도교수를 변경하도록 한다.

제5조(지도교수의 임무) ①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학교생활, 학습활동, 진로선택 등에 관하여 상담하고 지도한다.

② 지도교수는 매 학기 1회 이상 지도학생과 상담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학생과 면담 후에는 면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면담이 가능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지도교수평가) ① 학생지도교수에 대하여 별도의 평가를 하도록 하며 평가결과의 요지를 해당교수에게 알려준다.

② 우수 지도교수에게는 우수지도교수상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평가결과는 교원의 업적을 평가하는 데에도 고려한다.

제7조(학생지원센터) 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상담과 진로·취업지도를 위하여 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의 학교생활 상담, 교육 및 지원
2. 학생의 진로설계 상담, 교육 및 지원
3. 학생의 취업상담, 교육 및 지원
4. 각종 검사의 실시와 정보 제공
5. 그 밖에 관련한 사항

③ 센터에 센터장을 두되, 학생부원장이 겸직한다.

④ 센터에 전문위원을 두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임명한다.

⑤ 센터는 매년 활동내역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다음 해의 활동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지도교수제의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09.4.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0.>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

이 지침은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5.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